

중앙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지침

- 제정 : 2016년 3월 2일
- 개정 : 2018년 2월 27일
- 개정 : 2018년 8월 28일
- 개정 : 2019년 8월 24일
- 개정 : 2025년 2월 6일
- 관리부서 :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운영팀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 규정 제38조 “규정위반자에 대한 조치”의 세부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3조 (이용증·계정의 대여 및 도용) ① 도서관 출입은 이용증(모바일이용증, 카드학생증) 및 도서관에서 발급한 임시 출입증으로 가능하다. 계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의미한다.

- ② 이중신분 등록자는 제1항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.
- ③ 도서관 이용증 및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-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실 조치하며, 양측 3개월 출입 및 대출을 정지한다.

제4조 (훼손 및 무단반출) ① 도서관의 자료와 물품 및 다른 사람의 물품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할 수 없다.

- ②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1개월간 도서관 출입 및 대출 정지, 2회 적발 시 1년간 출입 및 대출을 정지하고,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지도를 의뢰한다.
- ③ 자료를 훼손한 경우에는 도서 변상처리 지침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.
- ④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수리 및 재 구매를 위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 (시설 이용 위반) ① 도서관 시설 이용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의 벌점과 제재 조치로 이용을 제한한다.

- 1. 열람석 무단 사용 및 물품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벌점 1점
- 2. 사물함 무단 사용 및 물품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벌점 1점
- 3.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열람 좌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벌점 2점
- ② 누적 벌점 1, 2점은 경고, 3점은 열람실 좌석 발급을 10일간 정지하며, 4점 이상은 열람실 좌석 발급을 1개월간 정지하고, 졸업생 회원제 서비스 신청을 제한한다.
- ③ 벌점의 적용기간은 최초 벌점 부여일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.

제6조 (자료의 연체) ① 단행본은 1일 1책당 5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며,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책당 100원의 연체료를 연체일수만큼 부과한다.

- ② 지정도서는 1책당 50원의 연체료를 연체시간만큼 부과하며, 3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책당 100원의 연체료를 연체시간만큼 부과한다.
- ③ 연체일수가 30일(지정도서 30시간)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체도서 반납 전까지 도서관 출입 및 좌석예약을 정지한다.
- ④ 연체일수가 300일(지정도서 300시간)을 초과할 경우에는 1책당 최고 3만 원까지 연체료를 부과한다.
- ⑤ 미납도서가 있는 경우에는 반납 시까지 제증명 발급을 정지한다.

제7조 (소음 및 식음 위반) ① 도서관에서 고성방가, 잡담, 통화 등 기타 다른 사람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소음 행위를 금지한다. 컴퓨터의 사용은 금지된 장소(일반 열람실)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.

② 음식물의 취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, 음료의 경우 깨지지 않고 뚜껑이 있는 용기는 허용한다.

③ 스터디룸에서는 음료를 포함한 모든 음식물을 취식할 수 없다.

④ 위 각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하며, 2회 적발 시 10일간 도서관 출입을 정지하고, 3회 적발 시 1개월간 도서관 출입 및 졸업생 회원제 서비스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 (게시물 부착) ① 게시물은 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만 게시할 수 있다.

② 게시물을 허가받지 않았거나 지정장소 이외에 부착하는 경우 및 기한이 경과된 게시물은 철거한다.

제9조 (방치, 배포 및 판매 위반) ① 개인 물품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수거하며, 수거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공지 후 폐기한다.

② 도서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인쇄물을 배포, 판매할 수 없다.

③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실 조치한다.

제10조 (기타 위반) ① 다른 이용자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불쾌감을 유도하는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.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폭언, 욕설, 소란, 음주 또는 음주 후 입실하는 행위

2. 무단 촬영, 불필요한 신체 접촉, 음란 행위,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, 다른 사람을 계속 응시하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

3. 도서관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

②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, 관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도서관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절도, 폭력, 기물 파괴, 흥기 난동, 업무 방해 등 법령 위반 행위

2. 감염병 및 재난, 비상 상황 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

3. 관내 질서를 해치고, 질서 유지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행위

③ 모든 이용자는 중앙도서관 규정 및 ‘자료와 시설 이용지침’을 따를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위반한 자는 [별표 1]에 따라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 (제재 절차) ① 중앙도서관 규정 및 ‘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지침’, ‘자료 및 시설 이용지침’을 위반한 자에게는 위반 사항 및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.

② 중앙도서관 규정 및 ‘이용수칙 위반자 제재 지침’ 위반에 대한 기록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다음 해(2년)까지 보관해야 한다.

③ 제10조(기타위반) 제2항의 위반 시, 부서의 장은 단계별 조치내용 및 위반 행위 발생 보고서를 기록하여 관련 부서와 공유한다.

[별표1] 관내수칙 및 위반 행위별 제재 내용 (신설 2025.2.6.)

위반행위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
1. 도서관 내 통화, 잡담, 고성방가 등 소음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	경고	10일 출입정지	· 1개월 출입정지 · 졸업생 회원제 서비스 신청제한	
2.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·취식				
3. 도서관 자료 또는 물품의 훼손 및 무단 반출, 비품 및 시설물 훼손·오손	1개월 출입 및 대출정지	· 1년 출입 및 대출정지 · 학과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 지도의뢰		
4. 다른 이용자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	경고	· 3개월 출입 및 대출정지	· 6개월 출입 및 대출 정지 · 졸업생 회원제 서비스 신청제한	
5.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관내 질서 유지를 위반한 경우	· 퇴실 조치 · 1년 출입 및 대출정지 · 졸업생 회원제 서비스 신청제한	· 영구 이용중지		
6. 열람석 및 시설물(사물함 등) 무단 사용 및 개인 물품 방치	· 벌점 1점 · 경고	· 벌점 1점 (누적 벌점 2점) · 경고	· 벌점 1점 (누적 벌점 3점) · 10일 좌석발급 정지	· 벌점 1점 (누적 벌점 4점) · 1개월 좌석발급 정지 · 졸업생 회원제 서비스 신청제한
7.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열람 좌석을 발급한 경우	· 벌점 2점	· 벌점 2점 (누적 벌점 4점) · 1개월 좌석발급 정지 · 졸업생 회원제 서비스 신청제한		
8. 이용증·계정의 대여 및 도용	· 퇴실 조치 · 양측 3개월 출입 및 대출정지			

부칙 1

이 지침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2

이 지침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3

이 지침은 201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4

이 지침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5. 2. 6.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